

제72조의2 사실과 다른 외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환급



제72조의2의 요약

- 세무서장은 분식회계 등으로 경정시 법인세상의 각종 세액차감 공제후 남은 금액 있는 경우 환급하거나 환급가산금을 즉시 지급함.
 - 환급금은 분식회계 등으로 인한 경정과 관련한 금액을 순차적으로 하고 세액공제하고 남은 잔액으로 함.
 - 환급가산금은 ① 분식회계경정하면서 5년이 경과한 사업연도에도 환급금이 남아 있는 경우 : 분식회계 등에 기인한 경정세액공제 및 환급금⊕국세환급가산금
② 5년 이내 사업연도에 전액 공제한 경우 : 분식회계 등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국세환급가산금
- 해산시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세액이 계산되면 분식회계관련 금액에서 이를 먼저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을 즉시 환급하여야 함.
- 합병·분할로 해산시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여 잔여기간동안 세액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한해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지급함.

● 제72조의2

[사실과 다른 외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환급]

-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6조제2항제4호에 따른 경정을 할 때 제58조의3 및 제59조에 따라 세액공제한 후 남은 금액이 있으면 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을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내국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해산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77조에 따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세액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을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I. 사실과 다른 분식외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청산에 따른 환급

증권거래법 및 외감법에 의한 보고서를 제출함에 있어 수익이나 자산을 과다계상하거나 손실 또는 부채를 과소계상하는 등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한 경우에 당해 내국법인이나 그 감사인 또는 소속 공인회계사가 경고·주의 등의 조치를 받은 법인이 과다납부한 법인세액의 환급을 경정·청구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법인세의 각종 세액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분식회계기업의 해산(합병·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시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세액이 계산되면 분식회계관련 환급세액에서 먼저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

II. 분식외계 등으로 인한 경정에 따른 환급세액 계산

① 최종 남은 잔액으로 환급

분식회계가 발견되면, 이미 손익과다인식으로 과다납부한 세금중에서 환급받을 금액은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5년 이내 납부한 정상적 법인세액에서 순차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을 환급하는데, 환급금은 법 제58조의3의 규정에 의해 분식회계 등으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를 순차적으로 적용한 후 최종적으로 남은 잔액으로 한다.

관련법령

● 시행령 제110조의2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환급세액의 계산】

- ① 법 제7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은 법 제5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세액공제하고 최종적으로 남은 잔액으로 한다.

(2003. 12. 30 신설)

환급가산금은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한 사업연도 후에도 환급금이 아직 남아있는 경우라도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 세액공제 및 환급금과 일반국세환급가산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즉, 5년이 지나도 환급해주며, 환급가산금을 더 추가해 주지는 않고 5년까지의 확정된 금액만 지급한다. 5년 이내에 사업연도에 과다납부한 세액이 전액 공제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세액공제와 일반국세환급가산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합병 또는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는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이를 승계하여 잔여기간동안 세액공제하고 잔액에 한해서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지급한다.

관련법령

● 시행령 제110조의2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환급세액의 계산】**

- ① 법 제7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은 법 제5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세액공제하고 최종적으로 남은 잔액으로 한다. (2003. 12. 30 신설)
- ② 법 제7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가산금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5. 2. 19 개정)
 - 1. 법 제66조제2항제4호의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한 사업연도에 환급금이 남아 있는 경우 : 법 제5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세액공제한 각 사업연도의 세액공제 금액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에 각각 「국세기본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 2. 법 제66조제2항제4호의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의 사업연도에 과다납부한 세액을 전액 공제한 경우 : 법 제5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세액공제한 금액에 각각 「국세기본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 ③ 법 제72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해산하는 경우로서 법 제58조의3 및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때에는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을 포함한다)이 이를 승계하여 잔여기간 동안 법 제58조의3제1항 및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지급한다. (2006. 2. 9 신설)